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1가단1044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신귀섭, 오경아, 박성령, 서재국

변론 종결2024. 11. 28.

판결 선고2024. 12. 12.

주 문

-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소외 C 사이의 2020. 2.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A은 소외 C에게 이 법원 등기와 2020. 3. 23. 접수 제37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2020. 7. 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소외 C에게 이 법원 남대전등기소 2020. 7. 15. 접수 제4256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의제자백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의 무자력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채권자들 중 피고들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4)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하나, 악의의 사해의사는 공동담보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되지 원고라는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대전지방법원 2022나114117 판결 참조)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광

별지